
**2021년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8회 전환교육 대상자 자격인정 안내서**

2021. 7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차 례

◆ 안내사항	
제1장.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개요	1
1. 발달재활서비스란?	1
2.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이란?	2
제2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 안내 ..	6
1.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7
1) 전환교육 자격요건	7
2) 전환교육 대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10
3) 전환교육 자격인정 및 신청방법	11
(1) 전환교육 자격인정 대상자 및 절차	11
(2) 전환교육 대상자별 자격인정 제출서류	12
(3) 전환교육 대상자 경력증명서 제출방법	21
2. 자격인정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27
3. 서류 점검 주요 미인정 사유	31
제3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35
제4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자격인정 온라인 신청방법	38
제5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자격인정 자주하는 질문	52

표 목차

[표 1] 경력 있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12
[표 2] 관련학과 제출서류	14
[표 3] 경력 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17
[표 4] 경력증명서 작성항목 및 점검 요소	22
[표 5] 경력증명 대체서류	25
[표 6] 인정방법(민간자격증소지자) 미인정 사유	31
[표 7] 인정방법(관련학과) 미인정 사유	33
[서식 1] 자격인정 경력증명 대체서식	26
[서식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이의신청서	28
[서식 3]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 (기관발급용)	29

그림목차

[그림 1] 고시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추진 체계	3
[그림 2] 고시 이전 제공인력 자격관리 추진 체계(유예기간)	3
[그림 3]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운영체계	4
[그림 4]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인정 운영체계	5
[그림 5] 전환교육 대상 자격여부 확인 화면	10
[그림 6]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자격인정 절차 (경력 있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학과+관련경력 1,200시간인 제공인력)	11
[그림 7]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자격인정 절차(경력 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11
[그림 8] 2021년 3월 31일 이전 전환교육 이수자 경력증명서 작성 예시	16
[그림 9]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 예시(기관발급용)	19
[그림 10] 경력증명서 작성 예시	23
[그림 11] 제공인력 관리 캡처 화면	24

◆ 안내사항

■ 2021년 8회 전환교육 대상자 자격인정 주요안내

회차	추진일정	접수기간
8회 전환인정	2021. 08. 09 ~ 미정	2021. 08. 09. ~ 08. 20 (2주)

- **8회 자격인정 신청은 2021년 7월 31일 이전 전환교육 이수자만 신청가능**
- **2021년 8월 1일 이후 전환교육 이수자는 다음 회차 전환교육 자격인정 기간에 신청 가능**
- 접수에서 자격인정서 발급까지의 기간은 **접수 마감일 이후 공지 예정**
- 전환교육 자격인정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변동사항이 공지되므로 확인 필요
- 전환교육 자격인정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cert>) 및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8회 전환교육 자격인정 안내서**』 참고

※ **8회 인정 필수 확인사항**

- 전환교육 후 고시이전 민간자격증 소지자 조건으로 한 개의 영역 자격인정 신청 가능, 추가 영역 민간자격증으로 자격인정 불가하나 『교과목 이수』 혹은 『관련학과+관련경력 1,200시간』을 통해 자격 확인 가능
- 민간자격증 인정기준에 의거 기존 7회시까지 인정된 민간기관 자격증에 대해서도 개정된 인정기준에 충족되어야 함(8회 이전 자격인증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음)

• 문의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대표전화 1544-6065

홈페이지 <https://www.broso.or.kr/cert>

※ 전화상담은 접수기간 동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 전환교육 자격인정 관련 상담만 가능

※ 대표전화 외 다른 부서 전화연결 시 상담 진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대표전화로 문의

※ 접수기간 동안 다량의 전화상담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에 문의

※ **문의 전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먼저 확인**

I.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개요

1. 발달재활서비스란
2.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이란

1. 발달재활서비스란?

○ 사업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2.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이란?

발달재활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재활서비스 유형별 최적 자격기준을 수립하고, 제 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인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법적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67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표1」다목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절차 기준'개정(17.9.12 공포, 18.9.12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자격 기준(이수 과목 등) 및 인정 절차 등 세부사항 제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규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 공인 인증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현재 언어재활사만 해당)
-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은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 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 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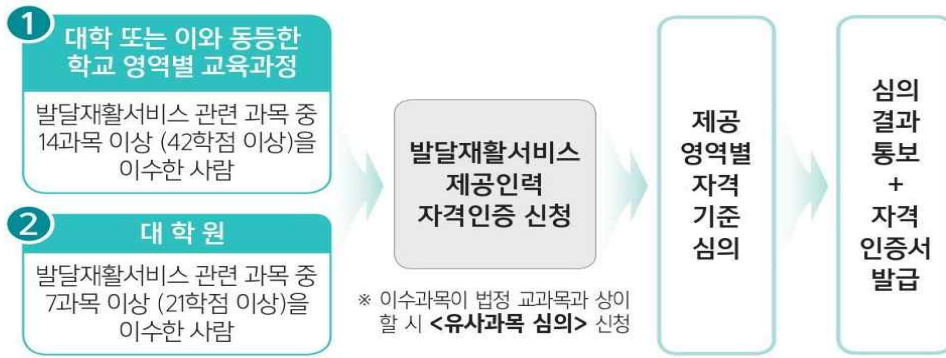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인정 절차 기준(2020-335) 고시 전부 개정

- 가. 발달재활서비스 적용영역 규정에 기존 서비스 제공영역인 심리운동을 명시하고 향후 자격관리 위원 심의를 거쳐 적용영역을 확대(제 2조)
- 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 등 제공인력 자격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개발원이 '자격확인 결과'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시 시, 군, 구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아 제공기관 및 시, 군, 구에 편의 제공(제 4조)
- 다. 시행규칙 부칙 제 519호에 따라 자격기준 경과조치 관련, 기존제공인력 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위 및 경력있는 자로서 개발원의 자격 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제 5조)
-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하여 자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2에 따라 설립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지정(제 7조)
- 마.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전공과목 운영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재활심리, 운동발달재활 영역의 선택지원 이수 가능한 전공과목 확대(별표2)

1) 발달재활서비스 자격확인 방법

(1)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확인 대상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인정을 받아야 활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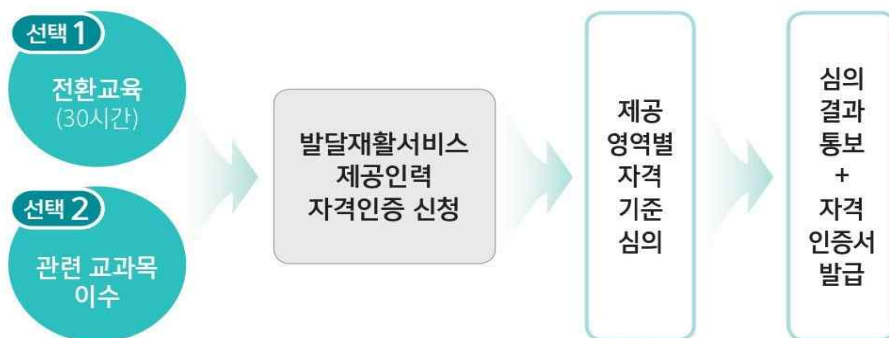


※ 학부와 대학원 통합해서 이수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음

[그림 1] 고시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절차

(2) 자격기준 경과조치 대상자

고시 시행(18.9.12) 이전 ①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제공인력의 경우 2021년 9월 12일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그림 2] 고시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절차

※ 경과조치 대상자의 경우, **21년 9월 12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환교육 30시간** 수료한 후 **23년 9월 12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전환교육수료자) **자격확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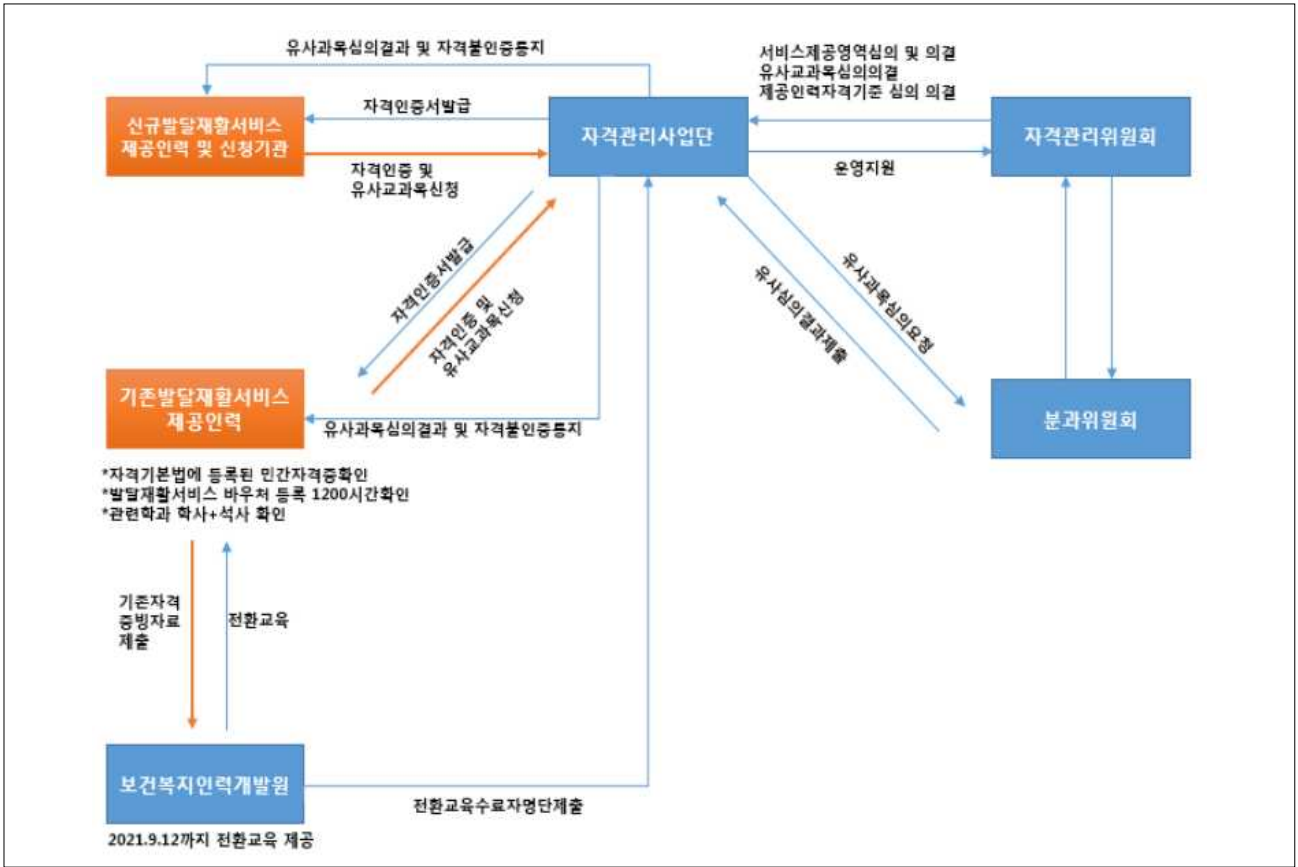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



[그림 3]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운영체계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위원구성: 자격관리위원 10인
이용자대표(1인), 제공인력 대표(1인), 분과위원회 대표(3인), 정책전문가(1인), 자격관리 전문가(1인), 복지전문가(1인), 당연직(2인)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35호 제 7조 2항』
 - 개발원은 제 1항에 따른 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 2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관한 사항
 2. 제 4조 제 2항에 따른 유사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림 4]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인정 운영체계

Ⅱ.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

1.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 1) 전환교육 자격 요건
 - 2) 전환교육 대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3)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
2. 자격인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3. 서류 점검 주요 미인정 사유

제2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 안내

1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1) 전환교육 자격 요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을 수료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

▣ 전환교육 대상 **자격** 관련 문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사업단(☎ 1544-6065)
 - 홈페이지 <https://www.broso.or.kr/cert> 에서 『전환교육』 자격여부 확인

▣ 전환교육 **신청 및 일정, 내용** 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1833-3460)
 - 홈페이지 <https://www.kohi.or.kr>

▣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가. (고시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있는 경우

(1) 고시 이전 (2018. 9.12)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재활치료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i.or.kr>)에서 해당 자격증 검색
- 고시 시행 이전 취득 자격증이지만,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미검색 시 인정 불가
- 민간자격 취득 자격증명증에 명시된 명칭과 현재 사용되는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사용 명칭 확인, 자격인정 서류 제출 시 취득 시 자격증 사본과 변경 자격증 사본, 명칭 변경에 따른 확인서(기관이 발급한 공식문서, 발급기관 직인 포함) 제출

예) 자격증 취득시 명칭: 미술치료사 → 변경된 명칭 : 미술심리상담사

- 민간자격증이 전환교육 신청 및 인정 신청 시 자격유지 기간이 유효해야 함,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인한 자격 정지 시 신청 불가
- 고시이전 취득 자격증으로 현재 폐지된 자격증의 경우
 - 폐지된 자격증의 경우에도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폐지자격검색】**에서 검색되어야 함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검색이 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인정 될 수 있음

※ 소지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자격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권한이므로, 전환교육 신청 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인정여부 사전 확인 불가하며 전환교육 대상자 요건 확인만 가능

(2) 고시이전(2018. 9. 12)까지 재활치료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4년제 학사 또는 석사 졸업 시 경력 600시간, 동일전공 학사+석사 졸업 시 경력 0시간
- 경력 1,200시간(1년 이상 근무) 기준, 600시간(6개월 이상 근무)
- 관련 분야 경력은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해당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전환교육 대상은 기존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므로 학교, 병원, 치료실 등의 경력은 인정 안됨

※ 『경력증명』에 관한 제출 서류는 해당내용 참조 (p.14)

나. (고시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없는 경우

(1) 고시 이전 (2018. 9.12)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재활치료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i.or.kr>)에서 해당 자격증 검색
 - 고시 시행 이전 취득 자격증이지만,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미검색 시 인정 불가
 - 민간자격 취득 자격증명증에 명시된 명칭과 현재 사용되는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사용 명칭 확인, 자격인정 서류 제출 시 취득 시 자격증 사본과 변경 자격증 사본, 명칭 변경에 따른 확인서(기관이 발급한 공식문서, 발급기관 직인 포함) 제출
예) 자격증 취득시 명칭: 미술치료사 → 변경된 명칭 : 미술심리상담사
 - 민간자격증이 전환교육 신청 및 인정 신청 시 자격유지 기간이 유효해야 함,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인한 자격 정지 시 신청 불가
 - 고시이전 취득 자격증으로 현재 폐지된 자격증의 경우
 - 폐지된 자격증의 경우에도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폐지자격검색】**에서 검색되어야 함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검색이 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인정 될 수 있음
- ※ 소지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자격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권한이므로, 전환교육 신청 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인정여부 사전 확인 불가하며 전환교육 대상자 요건 확인만 가능

• 고시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없는 민간소지자의 경우, **아래의 민간자격증 심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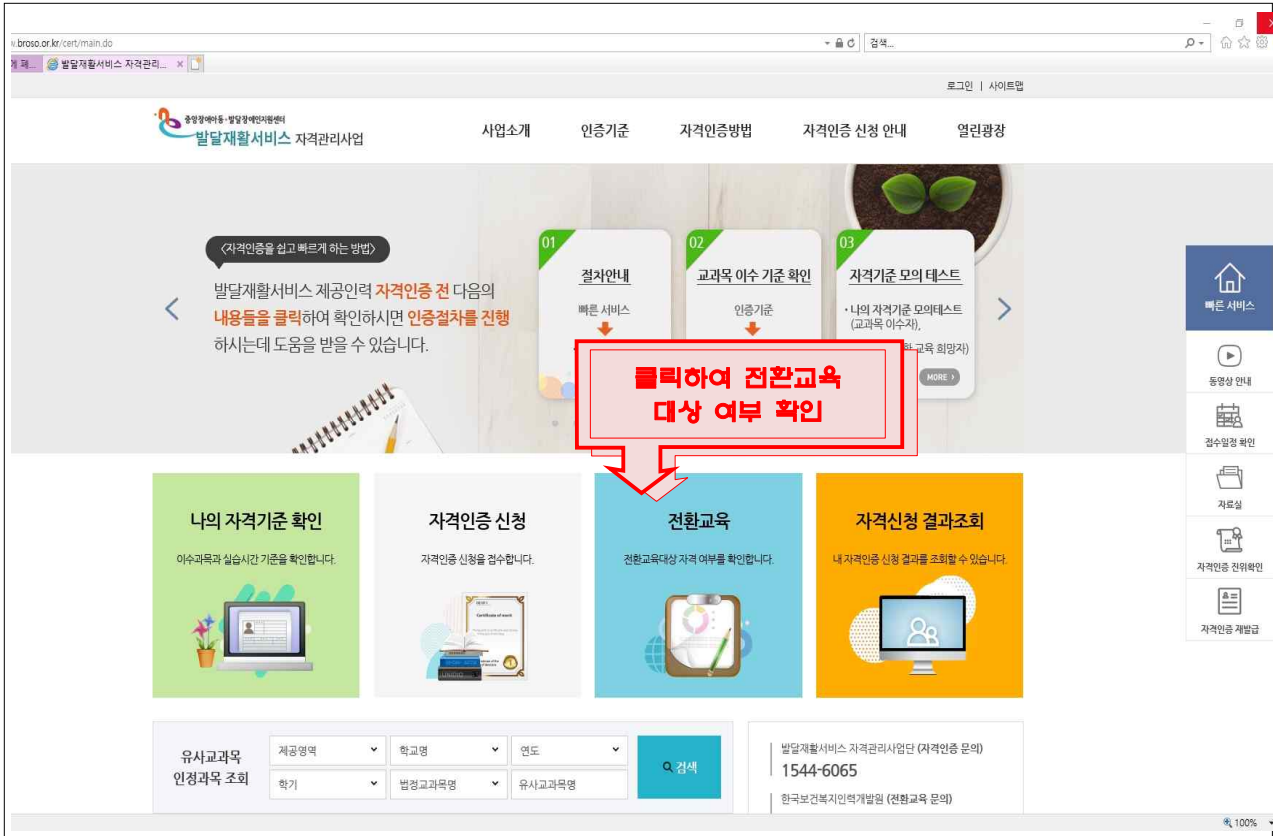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인정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증 고시이전 등록된 자격증
- 민간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내용에 제공영역 최종교육과정(전공영역 과목)의 내용 포함여부(교육과정 30% 이상 충족)
-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시간 150시간 이상(교과목 이수시간의 30%이상)
- 자격증 취득 후 자격관리를 위한 자격대상자의 보수교육 실시 여부 (3회 이상)

2) 전환교육 대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전환교육 신청 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 홈페이지 (<https://www.broso.or.kr/cert>)에서 전환교육 대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전환교육 신청 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인정여부는 사전 확인 불가, 전환교육 대상자 요건 확인만 가능



[그림 5] 전환교육 대상 자격여부 확인 화면

* 9개 영역 점검표 경로

홈페이지 → 메인화면 **전환교육**(하늘색 상자) → 전환교육대상 점검표

* 기타영역 점검표 경로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자료실** → [전환교육점검표] 기타영역(10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제공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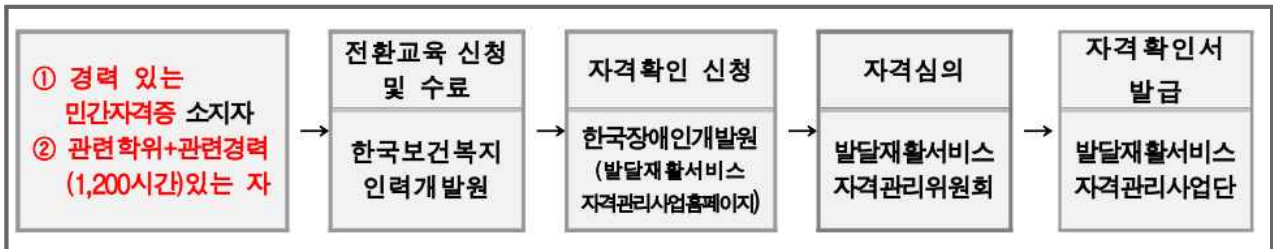
3)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

(1) 전환교육 자격인정 대상자 및 절차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중 전환교육 대상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전에 확인되어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전환교육을 수료한 자
- ▣ 모든 자격인정절차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서류 제출 필수
- ▣ 최종인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확인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개인이 출력함
 - 자격관리사업단에서 서면으로 별도 발급하지 않음
- ▣ **고시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있는 민간소지자 및 관련학과+관련경력 1,200시간이 있는 제공인력, 고시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인정 사항 확인 요망**

[그림 6]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자격인정 절차

[경력 있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학과+관련경력 1,200시간인 제공인력]



[그림 7]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자격인정 절차

[경력 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2) 전환교육 대상자별 자격인정 제출 서류

○ (고시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있는 경우

① 고시 이전 (2018.9.12)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표 1] 경력 있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요 점검 사항
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 홈페이지 (https://www.broso.or.kr/cert)에서 온라인 신청(p.39 참조)
② 전환교육 수수료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ohi.or.kr/kps)에서 교육수수료 후 출력 제출 온라인 수수료증, 집합교육 수수료증 모두 제출해야함
③ 최종학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인정 신청일 기준 발급일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수여증, 학위수수료증 등 공지된 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 제출 불가 예) 학위기, 학위증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등 발달재활서비스 해당 제공영역 관련 최종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학원, 사이버 과정 등)
④ 민간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명칭 확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시기 이후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의 경우, 취득 시기 자격증과 명칭 변경 후 자격증, 명칭 변경 확인서(기관이 발급한 공식문서, 발급 기관 직인 포함) 제출 요망 자격유효 기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발급 받은 자격증의 경우, 갱신 전 자격증을 함께 제출 요망 (고시이전 발급받은 자격증 사본 함께 제출 요망) 자격인정 신청 시 인정받고자 하는 영역의 해당 민간자격증만 제출, 소지하고 있는 신청영역과 관련 없는 모든 자격증 첨부 시 미인정 됨
⑤ 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바우처 【제공인력관리】 화면 캡처본 반드시 첨부 경력증명서 외 재직증명서 인정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교육 신청시 제공인력 ID 미가입자 및 2021년 3월 31일 이전 전환교육 이수자: 경력증명서 제출 시 수기로 제공인력 ID를 기입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p. 16 참조 2021년 4월 1일 이후 전환교육 이수자: 전환교육 이수 시 제공인력 ID 입력하므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⑥ 증명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인정서 첨부용 증명사진을 파일 (jpg, png 등)로 제출 ※ 셀카사진 금지

<참조>

- 자격인정 신청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에서 민간아이핀 인증 후 신청
 - 접수에서 최종자격인정까지 절차는 온라인으로 운영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서 발급 전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서류 제출 필수
 - ※ 제출서류 위조 발견 시 자격인정이 취소되는 등의 조치 시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환교육 신청 시 경력 있는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발달재활바우처 제공인력 ID 필수 기입, 제공인력 ID는 재직기관에서 확인
 - 전환교육 신청시 제공인력 ID 미기입자 및 2021년 3월 31일 이전 전환교육 이수자: 경력 증명서 제출 시 수기로 제공인력 ID를 기입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p. 16 참조
 - 2021년 4월 1일 이후 전환교육 이수자: 전환교육 이수 시 제공인력 ID 입력하므로 경력 증명서 원본 제출
 - ※ 제공인력 ID 미기입시, 자격 인정 심의 시 미인정될 수도 있으며 미인정의 책임은 개인(신청자)에게 있음
 - 경력증명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출력, 경력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제공인력 관리 캡처 화면과 함께 제출(캡처 방법 ☞ p. 24참조)
 -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제공인력관리】 캡처본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관련 분야 경력은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해당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학교, 병원, 치료실 등의 경력 미인정)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증명사진 제외), 반드시 A4사이즈로 해당내용이 정확히 들어가야 함
 - 자체 서류 저장 시 반드시 저장형태 확인 요망, 미준수 시 서류의 확인내용 불가로 구비서류 확인 미인정 처리될 수 있음
 - 예) A4 사이즈로 저장, 내용의 형태는 A3, A5의 크기일 경우 내용 확인 불가 **핸드폰 촬영 서류 제출 금지**
 - 오기입 확인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오기입을 한 경우 자격인정 심의에서 미인정 됨
 - 개명 시 주민등록증 초본 추가 제출 필요
-

- ② 고시이전(2018. 9. 12)까지 **재활치료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표 2] 관련학과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요 점검 사항
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 홈페이지 (https://www.broso.or.kr/cert)에서 온라인 신청(p. 39 참조)
② 전환교육 수료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ohi.or.kr/kps)에서 교육수료 후 출력 제출 • 온라인 수료증, 집합교육 수료증 모두 제출해야함
③ 최종학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인정 신청일 기준 발급일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수여증, 학위수료증 등 • 공지된 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 제출 불가 예) 학위기, 학위증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등 • 발달재활서비스 해당 제공영역 관련 최종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학원, 사이버 과정 등)
④ 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바우처 【제공인력관리】 화면 캡처본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외 재직증명서 인정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교육 신청시 제공인력 ID 미가입자 및 2021년 3월 31일 이전 전환교육 이수자: 경력증명서 제출 시 수기로 제공인력 ID를 기입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p. 16 참조 - 2021년 4월 1일 이후 전환교육 이수자: 전환교육 이수 시 제공인력 ID 입력하므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⑤ 증명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인정서 첨부용 • 증명사진을 파일(jpg, png 등)로 제출 ※ 셀카사진 금지

<참조>

- 자격인정 신청: 홈페이지에서 민간아이핀 인증 후 신청
 - 접수에서 최종자격인정까지 절차는 온라인으로 운영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서 발급 전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서류 제출 필수
 - ※ 제출서류 위조 발견 시 자격인정이 취소되는 등의 조치 시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환교육 신청 시 관련학과+관련경력 1,200시간인 제공인력의 경우 발달재활바우처 제공인력 ID 필수 기입, 제공인력 ID는 재직기관에서 확인
 - 전환교육 신청시 제공인력 ID 미기입자 및 2021년 3월 31일 이전 전환교육 이수자: 경력증명서 제출 시 수기로 제공인력 ID를 기입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p. 16 참조
 - 2021년 4월 1일 이후 전환교육 이수자: 전환교육 이수 시 제공인력 ID 입력하므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 ※ 제공인력 ID 미기입시, 자격 인정 심의 시 미인정될 수도 있으며 미인정의 책임은 개인(신청자)에게 있음
 - 경력증명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출력, 경력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제공인력 관리 캡처 화면과 함께 제출(캡처 방법 ☞ p. 24 참조)
 -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제공인력관리】 캡처본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경력 1,200시간(1년 이상 근무) 기준, 600시간(6개월 이상)은 『경력증명서』의 재직 기간으로 확인
 - 관련 분야 경력은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해당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학교, 병원, 치료실 등의 경력 미인정)
 - 전환교육 수료자라도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학과로 미인정 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증명사진 제외), 반드시 A4 사이즈로 해당내용이 정확히 들어가야 함
 - 자체 서류 저장 시 반드시 저장형태 확인 요망, 미준수 시 서류의 확인내용 불가로 구비서류 확인 미인정 처리될 수 있음
 - 예) A4 사이즈로 저장 내용의 형태는 A3, A5의 크기일 경우 내용 확인 불가, 핸드폰 촬영 서류 제출 금지
 - 구비서류에 대한 정확한 점검 후 제출 요망
 - 오기입 확인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오기입을 한 경우 자격인정 심의에서 미인정 됨
 - 개명 시 주민등록증 초본 추가 제출 필요
 - ※ 관련학과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교과목인정을 통해 인정 신청 요망
-

경력증명서

담당자 확인	
담당자 확인	한개발 
발급 일자	2019. 06. 25

성명	김발달	주민등록번호	900217-1234567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무동 휴먼시아 302동 210호		
연락처 1	010-1234-9876	연락처 2	02-234-9876
사업구분	장애아동가족지원		
용도	감각재활 자격인정	제출처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제적기간	2017년 07월 04일 입사		
	2019년 06월 25일 재직중		

상기인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바우치사업의 제공인력으로
 상기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06월 25일 해당 위치에 제공인력 ID
수기로 기입

디딤돌교육원

대표자 이신상 

기관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20-2

기관명 (전화번호) 02- 3216-2500

**[그림 8] 2021년 3월 31일 이전 전환교육 이수자
 경력증명서 작성 예시**

○ (고시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없는** 경우

- ① 고시 이전 (2018. 9.12)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경력이 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표 3] 경력 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요 점검 사항
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 홈페이지 (https://www.broso.or.kr/cert)에서 온라인 신청(p. 35 참조)
② 전환교육 수수료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ohi.or.kr/kps)에서 교육수수료 후 출력 제출 수수료증(9시간, 21시간) 모두 제출
③ 최종학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인정 신청일 기준 발급일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수여증, 학위수수료증 등 공지된 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 제출 불가 예) 학위기, 학위증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등 발달재활서비스 해당 제공영역 관련 최종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학원, 사이버 과정 등)
④ 민간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명칭 확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시기 이후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의 경우, 취득 시기 자격증과 명칭 변경 후 자격증, 명칭 변경 확인서(기관이 발급한 공식문서, 발급 기관 직인 포함) 제출 요망 자격유효 기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발급 받은 자격증의 경우, 갱신 전 자격증을 함께 제출 요망 (고시이전 발급받은 자격증 사본 함께 제출 요망) 자격인정 신청 시 인정받고자 하는 영역의 해당 민간자격증만 제출, 소지하고 있는 신청영역과 관련 없는 모든 자격증 첨부 시 미인정 됨
⑤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 [서식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에 문의 및 발급 요청 지정된 『서식3』으로 제출 [서식3]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 (기관발급용)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인정 기준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사실임을 확인하는 기관 직인 필수 ※ 보수교육 및 교육과정 이수시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시 자격증 발급기관의 내규 혹은 회칙 등을 요청할 수 있음.
⑥ 자격증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에 문의 및 요청 지정된 양식이 없으며 발급기관별로 양식이 상이함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⑦ 증명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인정서 첨부용 증명사진을 파일 (jpg, png 등)로 제출 ※ 셀카사진 금지

<참조>

- 자격인정 신청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에서 민간아이핀 인증 후 신청
 - 접수에서 최종자격인정까지 절차는 온라인으로 운영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서 발급 전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서류 제출 필수
 - ※ 제출서류 위조 발견 시 자격인정이 취소되는 등의 조치 시행
-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broso.or.kr/cert) → 열린광장 → 자료실 → 8회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자 서식 안내 (서식3)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증명사진 제외), 반드시 A4사이즈로 해당내용이 정확히 들어가야 함
 - 자체 서류 저장 시 반드시 저장형태 확인 요망, 미준수 시 서류의 확인내용 불가로 구비서류 확인 미인정 처리될 수 있음
 - 예) A4 사이즈로 저장, 내용의 형태는 A3, A5의 크기일 경우 내용 확인 불가, **핸드폰 촬영 서류 제출 금지**
- 오기입 확인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오기입을 한 경우 자격인정 심의에서 미인정 됨
- 개명 시 주민등록증 초본 추가 제출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취소 및 정지 기준 >

- 개인에 대한 처리방안: 민간자격증의 허위 및 조작을 통해 자격인정을 신청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인정서 취득을 취소한다.
 - 발급기관에 대한 처리방안: 민간자격증의 허위 및 조작이 의심 또는 발견된 경우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며, 허위 및 조작 등을 통해 발급한 자격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의 모든 자격증*"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해당" 자격증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 발급한 "모든" 자격증 불인정한다.

[서식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기관발급용)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 미술심리재활				
신청자	자격대상자 성명	김발달	생년월일	1990.02.17
	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동 휴먼시아 302동 210호
교육기관	기관명	디딤돌교육원		
	대표자	박디딤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자동 부자빌딩 7층 708호		
	전화번호	02-1234-5678	기관홈페이지 www.didim.co.kr	
교육내용	자격증명	자격번호	취득시기	유효기간
	미술심리상담사	KI1234-56-7890	2017.6.8	2022.6.7
	등급	보수교육 여부/횟수	교육과정 이수시간	담당교수
	1급	유/4	500	김교수
	교육과정명			
미술심리상담사 1급 과정(미술치료의 진단적 기법 등)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첨부된 서류에 위배됨이 없음을 확인함

2021년 7월 6일

신청인(자격대상자)

김발달



확인자(발급기관)

디딤돌교육원



[그림 9]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예시)

첨부서류

자격대상자의 자격증 교육과정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위의 민간자격증 교육정보 확인서와 자격대상자의 자격증 교육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발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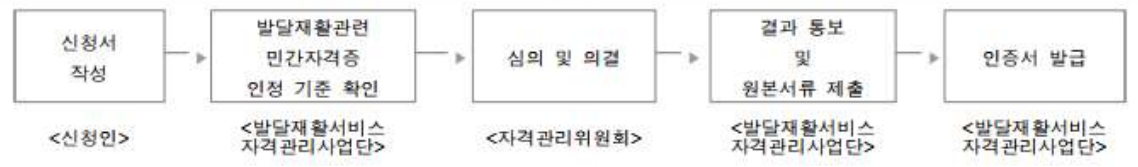
디딤돌교육원



작성방법

- ① 자격증 발급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관홈페이지를 적으십시오.
 - ② 자격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적으십시오.
 - ③ 자격대상자가 취득한 자격의 영역, 자격증명칭, 자격번호, 취득시기, 유효기간을 적으십시오.
 - ④ 자격대상자가 취득한 자격의 등급, 보수교육 여부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시간, 담당교수, 교육과정명을 적으십시오.
- ※ 신청하려는 자격의 영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영역별로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처리절차



[그림 9]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예시)

(3) 전환교육 대상자 경력증명서 제출 방법

(고시이전) 재활치료서비스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의 경우, 관련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제출

① 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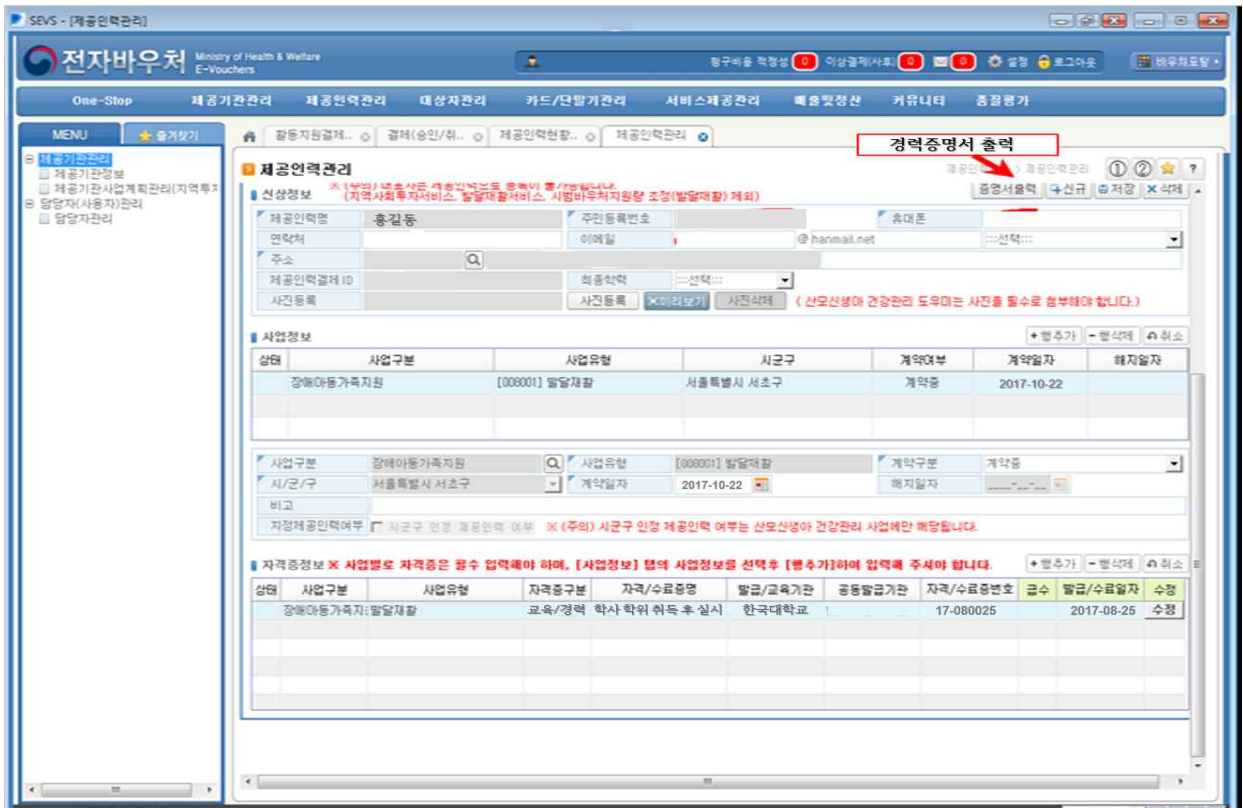
- 기존 근무기관 또는 현재 근무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 <경력증명서 + 제공인력관리> 발급 요청
 - 관련분야 고시이전에 해당경력 시간을 충족해야 함
 - 『재직 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이 아닌 현재 근무 상황만 확인되므로 인정 안됨
 - 『제공인력 관리』는 화면 캡처로만 출력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 경력증명서 발급 시 기입항목 및 유의사항

항목	점검 요소	참조사항(주요 불인정 사유)
담당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이름, 서명 또는 도장 • 발급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이름 미기입, 서명, 도장 없을 시, 발급 일자 미기록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오기입시 • 주민등록번호 오기입 시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주소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기입 확인 요
연락처 1 연락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 연락처와 추가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기입 확인 요
사업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등과 같은 해당 서비스 내용의 오기입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재활서비스 중 인정 받으려고 하는 해당 영역 기입 인정 기록 예) 감각재활자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관리』에 해당영역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한 경력 확인 불가능 할 경우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인정 등 오기입 시
재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 일과 퇴사일 정확히 기재 • 관련경력 1년 이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이전 경력시간이 해당기준에 미충족 시 •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 자격증명, 인정 신청 서비스 영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관련학과+경력자의 경우: 관련학과+인정 신청 영역+ 경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기입, 대표자 서명, 기관 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 직인 등 누락 시

[표 4] 경력증명서 작성 항목 및 점검 요소

[그림 11] 제공인력 관리 캡처 화면



<제공인력 관리> 화면 캡처시 유의사항

- <신상정보>, <사업정보>, <자격증 정보> 화면이 모두 출력된 **전체 화면** 제출
- <사업정보> 항목 사업구분에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유형에 “발달재활”로 명시된 경력 (2018.9.12. 이전)만 인정
- 해당 영역 자격증이 없거나, 관련학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자격증 정보의 <자격증 구분>란에 교육/경력으로 표기
 - <자격/ 수료증명>란에 “학위취득 후 실시”로 표기

제공인력 관리 “화면캡처”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인력 관리> 화면을 캡처하여 인쇄 제출(제공인력 관리 출력 시 엑셀로 출력되므로 **화면 캡처하여 출력**)
- **화면 캡처 방법**
 - 제공인력관리 화면을 켜둔 후 컴퓨터 자판기에서 'PrtScr'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캡처(복사) 됨



<사진 1> 컴퓨터 자판기에서 'PrtScr' 버튼

② 전자바우처로 『경력증명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의 <경력증명서 + 제공인력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시하는 서류로 대체[표5]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증빙서류 인정불가

- 기존 근무 기관의 폐업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일하고 있지 않으나 고시이전에 일한 경력이 있고 근무 기간이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미운영 기간(2009년~2013년) 인 경우
- ※ 현재 근무중이거나 전자바우처 운영이후(2014년)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자바우처 <경력증명서+제공인력 관리> 서류로 반드시 제출

[표 5] 경력증명 대체서류

제출서류명	발급방법	비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발달재활서비스 지정 담당 부서에 문의 및 발급 요청 - 기관에서 지정기관 신청 시 제출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서류 사본 제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담당자 (시·군·구 공무원) 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안내 책자 <서식 17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확인서 (지자체 담당자 확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발달재활서비스 지정 담당 부서에 문의 및 발급 요청 - 기관에서 지정기관 신청 시 제출한 자료 미보유 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확인서>를 요청하여 제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담당자 (시·군·구 공무원) 확인 누락 시 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확인서 <서식 1> 자격인정 경력증명 대체 서식

2

자격인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접수에서 자격인정서 발급까지의 기간은 접수마감일 이후 공지 예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신청 결과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인정 사유 등 확인 가능
- 최종결과 확인 문자가 전화 1544-6065로 발송되므로 해당 문자가 핸드폰에서 스팸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 자격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관련 안내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오류로 인해 "자격인정 결과 미인정"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서류제출과 함께 이의 신청 가능
- 자격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 신청(<서식 2>, 통보 후 1주 이내)
- ※ 명확한 사유가 없는 개별 자격인정 탈락 요인에 대한 상담 불가 (인정 관련 개별 결과는 온라인상에서 확인 가능함)

[서식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이의 신청서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인정구분	교과목 인정							전환교육 인정			
인정 신청영역	청능 재활		음악 재활		행동 재활		감각 재활		미술심리 재활		
	놀이심리 재활		심리 운동		재활 심리		운동 재활		/		
신청사유	< 이의 신청 사유 >										
	<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첨부 서류 목록 > 1. 2. 3.										
위와 같이 자격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이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14일 이상 소요)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재검토	→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이의 신청 결과 통보			
※ 처리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개별적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미인정 사유를 확인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은 <u>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오류</u> 로 인한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자격대상자의 자격증 교육과정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위의 민간자격증 교육정보 확인서와 자격대상자의 자격증 교육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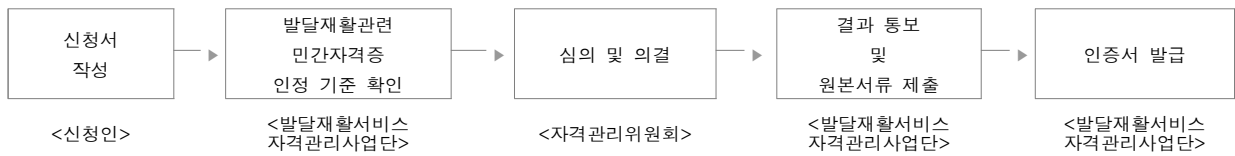
발급기관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자격증 발급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관홈페이지를 적으십시오.
 - ② 자격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적으십시오.
 - ③ 자격대상자가 취득한 자격의 영역, 자격증명칭, 자격번호, 취득시기, 유효기간을 적으십시오.
 - ④ 자격대상자가 취득한 자격의 등급, 보수교육 여부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시간, 담당교수, 교육과정명을 적으십시오.
- ※ 신청하려는 자격의 영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영역별로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처리절차



3

서류 점검 주요 미인정 사유

※ 본 미인정 사유는 참고사항임

※ 제출서류의 식별이 불가능 한 경우는 미인정

[표 6] 인정방법(민간자격증소지자) 미인정 사유

구분	항목	내용
신청 정보	-	① 성명 : 오기입 ② 생년월일 : 오기입
전환 교육 정보	-	① 민간자격증명 : 제출한 민간자격증 명칭 불일치 ② 발급기관명 : 제출한 민간자격증 발급처 불일치
첨부 파일	전환교육수료증	① 온라인 전환교육 수료증 미제출 ② 집합교육 전환교육 수료증 미제출
	최종학력증명서	① 최종학력증명서 미제출 (학적부, 성적증명서 미인정)
	경력증명 관련서류	[경력증명서]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출력한 경력증명서 미제출 (기관 자체 양식 미인정) ② 담당자 이름 미기입 ③ 서명 또는 도장 진위여부 확인 불가 및 누락 ④ 발급 일자 미기록 등 ⑤ 고시 이전 경력시간이 해당 기준에 미충족하는 경우 ⑥ <사업구분>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확인 불가 (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인정 불가) ⑦ <용도> 『제공인력 관리』에서 해당 영역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한 경력 확인 불가능한 경우 ⑧ <제출처>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과 다르게 기입
		[제공인력관리]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캡처한 제공인력관리 미제출
	[자격인정 경력증명 대체 서식] ① 지정된 양식이 아닌 경우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확인서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정담당자가 시군구 발달재활서비스 지정 담당자가 아닌 경우	

구분	항목	내용
첨부 파일	민간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자격증 미제출 ②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검색불가 (※ 폐지된 자격증의 경우에도 등록 폐지자격 검색에서 불가면 미인정) ③ 고시(2018. 09. 12.)이후 취득한 자격증 제출 ④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추가교육, 시험 등)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정지된 자격증 ⑤ 자격증명이나 발급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확인서를 미제출 한 경우 ⑥ 재발급 받은 자격증이더라도 고시 이전 취득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⑦ 민간자격증의 명칭이 제공영역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⑧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과의 관련성 없음 (예 : 미술지도, 영재 놀이교육, 운동처방 등) ⑨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을 통칭하는 듯한 자격증 명칭인 경우 (예 : 예술치료, 인지놀이 등) ⑩ 자격취득 교육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⑪ 동일협회에서 인정을 신청한 영역과 관련한 다른 자격증이 존재하는 경우 ⑫ 해당 영역에 없음 (예 : 인지치료, 무용, 장기, 다도 등) <p>※ 자격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장애아동 및 발달재활서비스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p>

[표 7] 인정방법(관련학과) 미인정 사유

구분	항목	내용
신청 정보	-	① 성명 오기입 ② 생년월일 오기입 ③ 최종학력 오기입
신청 학력 정보	-	① 학교명 오기입 ② 신청학력 오기입 ③ 전공/학과 오기입 ④ 학과(학부)명 오기입 ⑤ 졸업일자 오기입
전환 교육 정보	-	① 학교명 오기입 ② 졸업일자 오기입 ③ 전공/학과 오기입 ④ 전공명/학과명 오기입 ⑤ 관련분야경력 오기입
첨부 파일	전환교육수료증	① 온라인 전환교육 수료증 미제출 ② 집합교육 전환교육 수료증 미제출
	최종학력증명서	① 최종학력증명서 미제출 (학적부, 성적증명서 미인정) ※ 관련학과 학사+석사로 인정 신청의 경우 학사, 석사 졸업증명서 중 한 개 제출 시 미인정 ② 교육과정이 발달재활 영역과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 ※ 이 외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관련학과로 인정되 지 않은 경우 ③ 고시(2018.09.12.) 이후 졸업생인 경우

구분	항목	내용
첨부 파일	경력증명 관련서류	<p>[경력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출력한 경력증명서 미제출 (기관 자체 양식 미인정) ② 담당자 이름 미기입 ③ 서명 또는 도장 진위여부 확인 불가 및 누락 ④ 발급 일자 미기록 등 ⑤ 고시 이전 경력시간이 해당 기준에 미충족하는 경우 ⑥ <사업구분>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확인 불가 (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인정 불가) ⑦ <용도> 『제공인력 관리』에서 해당 영역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한 경력 확인 불가능한 경우 ⑧ <제출처> 점검 요소와 다르게 기입(오기입) ⑨ 고시 이전 경력시간이 해당 기준에 미충족 시
		<p>[제공인력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캡처한 제공인력관리 미제출
		<p>[자격인정 경력증명 대체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정된 양식이 아닌 경우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확인서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정 담당자가 시군구 발달재활서비스 지정 담당자가 아닌 경우

Ⅲ.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제3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에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기록착오, 누락, 오기입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www.broso.or.kr/cert) 온라인 자격 인정 실시에 따라 2020년부터는 접수 후, 보완 요청이 없으므로 정확한 서류 확인 및 제출 요망
-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자격인정 신청기간 외 온라인 서류 접수 등 불가
- 신청 회차 미인정 시 다음 회기 인정에 참여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매 회기 인정 신청 시 서류 재제출 필요
- 문서의 위조, 허위 작성 등 발견 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취소 및 정지 기준 >

- 개인에 대한 처리방안: 민간자격증의 허위 및 조작을 통해 자격인정을 신청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인정서 취득을 취소한다.
 - 발급기관에 대한 처리방안: 민간자격증의 허위 및 조작이 의심 또는 발견된 경우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며, 허위 및 조작 등을 통해 발급한 자격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의 모든 자격증*“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해당” 자격증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 발급한 “모든” 자격증 불인정한다.

○ 유의사항

- 전환교육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내용, 방법, 기타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공지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자격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함
- 해당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미인정의 책임은 개인(신청자)에게 있음.
- 전환교육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전화상담은 전환교육 신청기간, 16:00부터 18:00까지 운영

※ 자격심의 기간 중 전화상담 불가, 홈페이지 열린광장 【1:1 문의】 게시판 활용

※ 자격관리 상담 업무 진행 중 악성민원(욕설 및 협박 등)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음

※ 모든 상담내용은 자동녹음 됩니다.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전화나문자 등으로 성희롱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 제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입력 등에 의한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및 제2항)
폭언, 욕설	공포·불안 유발죄 :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한 폭언·욕설의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협박	협박(일반적인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IV. 전환교육 자격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제4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자격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 해당 서류 구비 후, 다음의 순서대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I-PIN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고, 민간 아이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민간 아이핀ID/비밀번호 입력 또는 신규발급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관련 문의 안내 >

※ 해당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의 권한이 아님

- 아이핀ID/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ID/비밀번호 찾기"로 확인 요망. 아이디 전체를 잊은 경우, "KCB 고객센터(아이핀)"에 연락하면 본인에 한하여 확인 가능함.
- 로그인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KCB 고객센터(아이핀)" 문의 요망.

4. 민간 아이핀이 없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규발급을 진행합니다.

2. 아이디가 없는 경우 신규가입: 가입한 아이디로 신청조회 등이 가능하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1) 모두 동의

2) 빈칸 입력

3) 클릭

5. 홈페이지 메인에서 “접수일정 확인” 을 클릭합니다.



6. 접수일정 확인에서 “해당 신청일정” 을 클릭합니다.

접수일정 확인

접수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목록입니다.

접수일정 목록

번호	회차	자격인용구분	일정명	등록일
1	2019-2	고교학 이주	고교학 이주-자격인용 (2019-11-01 01:00 - 2019-11-30 05:00)	2019-11-17
2	2019-1	전환교육	전환교육-자격인용 (2019-11-01 00:00 - 2019-11-30 00:00)	2019-11-17

해당 신청일정 클릭

1

7. 접수일정정보 화면에서 “전환교육 자격인증 신청” 을 클릭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접수일정 정보' (Application Schedule Information) pag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사업소개', '인증기준', '자격인증방법', '제공영역 신설/변경', and '열린광장'. Below the navigation bar, a breadcrumb trail indicates the current location: '홈 > 메인 서비스 > 접수일정 확인 > 접수일정 정보'.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title '접수일정 정보' and a sub-section '접수일정 상세정보'. A red warning message states: '※ 신청 전, 반드시 자격인정 관련 안내(일정, 안내문, 첨부파일 등)를 꼼꼼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Below the message, a button labeled '전환교육 자격인증 신청'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목록' (List) button is also visible.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there is a vertical sidebar with icons for '메인 서비스', '동영상 안내', '접수일정 확인', '다운로드', '자격인증 안내확인', and '자격인증 재접수'.

8. 자격인증 신청서(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전환교육 자격인증 신청서

전환교육 자격인증 신청서 작성 화면입니다.

빈칸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정보

✓ 성명	<input type="text"/>	✓ 생년월일	<input type="text"/>
✓ 주소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상세주소	<input type="text"/>	
✓ 휴대폰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 최종학력	졸업 기준으로 입력(수료 불가)		✓ 주민등록번호
✓ 신청학력	자격인증 신청할 학력 기입(졸업기준)		✓ 학교명
✓ 전공/학과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전공 <input type="radio"/> 학과	기입할 전공 또는 학과 선택 후 저장	

- 최종학력 : 본인의 실제 최종 학력 기입
- 신청학력 : 본인의 자격인정 신청할 학력 기입

9. 자격인증 신청서(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첨부파일 **해당하는 파일 첨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한교과수료증	온라인 수료증과 집합교과 수료증 모두 제출	여기에 파일을 드래그하세요. 첨부파일은 1개당 20MB 미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필수첨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종학력 증명서 (학위기, 학위증, 스캔어플 및 사진촬영 파일 불가)		여기에 파일을 드래그하세요. 첨부파일은 1개당 20MB 미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필수첨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력증명 관련서류		여기에 파일을 드래그하세요. 첨부파일은 1개당 20MB 미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필수첨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명사진(3X4)		여기에 파일을 드래그하세요. 첨부파일은 1개당 1개씩 등록 가능하며, 1개당 20MB 미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필수첨부
민간자격증 사본(해당자)	해당하는 자격증만 첨부, 관련없는 자격증 모두 첨부(시 미인증)	여기에 파일을 드래그하세요. 첨부파일은 1개당 20MB 미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필수첨부
기타		여기에 파일을 드래그하세요. 첨부파일은 1개당 20MB 미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필수첨부

위 내용을 읽고 동의합니다.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서 체크 후 다음 클릭

다음 **목록**

10. 작성한 자격인증 신청서를 검토 후 확인에서 “예” 를 클릭합니다.

확인

다음 화면에서 신청서 정보 확인 후 해당의 신청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요

클릭 후 신청 정보 확인

전환교육 자격인증 신청서 정보

전환교육 자격인증 신청서 정보 화면입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김민	생년월일	2000-03-21
주소	077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10 동국대 214-4번지		
휴대폰	010-4683-3337	이메일	141@naver.com
유선전화	없음	주민등록번호	990001 990000

신청 학력 정보

신청 학력	고졸	학교명	고교명
중등 학교 단계	고졸	진학 연도	2019
입학 일자	2012-11-01	졸업 일자	2019-11-08

11. 작성한 자격인증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자격인증 신청 방법

첨부파일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pdf	3.65 MB
성적 증명서	성적증명서.pdf	3.65 MB
실습확인서	실습확인서.pdf	3.65 MB
증명사진(3X4)	증명사진.jpg	77.14 KB
기타		

진행정보

진행상태	대기	신청일자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3 신청
1 수정
2 삭제
목록

1.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신청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작성 신청서의 정보가 삭제됩니다.
3.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자가점검표 체크 후 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자격인증 신청 자가점검표를 체크하고,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자가점검표

전원교육 자가점검표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1	민간자격에 해당하는 인증영역을 신청하였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기입한 수료기준과 관련한 전원교육 수료증이 일치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기입한 수료기준과 입원교육 수료증이 일치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6개월 이내 최종학력증명을 제출하였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전원교육 대상자로 2018.9.12 이전에 사유서 제출신청으로 등록되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발급이력서비스 자격신청서에 기록된 자격종 명칭과 자격명칭, 발급처는 일치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자격종 발급년도는 2018.9.12 이전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자격종은 현재 유효하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AA서비스에 맞게 서류를 제출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저장 **완료**

확인

신청서를 제출 하시겠습니까?

제출된 신청서는 수정 및 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예 **아니오**

1. 자가점검표 확인 후 저장
2. 최종 제출 시 수정 불가

1. 작성한 서류를 재검토하고, 자가점검표를 체크한 뒤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2. 다음의 화면에서 "예"를 클릭하면, 신청서가 최종 제출되어 이후 수정 및 보완 등이 불가능합니다.
3. "아니오"를 클릭하면,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최종"신청"버튼을 누른 이후 신청서 수정 및 보완 불가함(제출 완료 후 서류 미비·누락 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 회기 재신청해야 함). "신청"이후 수정 및 동일 영역 신청서 재제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관리자가 인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임의 수정할 수 없으며, 임의 조작·변경을 통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위한 조치임.

13. 홈페이지 메인에서 “자격신청결과조회” 를 클릭 후 “자격신청 결과조회” 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 자격신청 결과조회

2. 해당 신청목록 클릭하여 확인

- 1. 홈페이지 → 자격신청 결과조회
 - 2. 인증영역, 일정명(전환교육), **상태(신청완료)**
확인 후 해당 신청목록 클릭
- ※ “대기” 상태일 시 해당 신청서 클릭 후 최종제출 요망

V. 자주하는 질문

목 차

I. 공통사항	1
Q1. (인정방법) 제공인력으로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Q2. 저는 고시 이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증도, 발달재활서비스 경력도 없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나요?	1
Q3. (신청방법) 자격인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Q4. 자격인정 신청에서 최종 인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1
Q5.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원본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2
Q6. 신청서 1개로 여러 제공영역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Q7. 제공영역별로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2
Q8. 민간자격증소지자로 여러 제공영역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Q9. 고시 제 2018-167호 시행(2018.9.12.)이후에 민간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
Q10. 전화상담은 자격인정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나요?	3
Q11. 홈페이지 1:1문의에 남긴 제 문의가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안보여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3
Q12. 전환교육 대상자가 자격인정자인가요?	3
Q13. 전환교육을 21년 3월 31일 이전에 이수 했습니다. 제공인력 ID를 입력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Q1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ID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4
Q15. 자격인정 못 받은 사람은 2021년 9월 12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가요?	4
Q16. 기타영역은 교과목 이수 자격인정이 가능한가요?	4

목 차

Ⅱ. 제출서류	5
Q17. 전환교육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로 어떤 것이 있나요?	5
Q18. 고시 제 2018-167호 시행(2018.9.12.)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5
Q19. 고시 제 2018-167호 시행(2018.9.12.)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5
Q20.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한 원본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최종 자격 인정 후 사본을 제출하면 안 되나요?	6
Q21. 전환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전환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6
Q22. 전환교육은 무엇인가요? 일부 과목만 수강 가능한가요?	6
Q23. 민간자격증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6
Q24. 관련학과 전환교육 경력 산정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7
Q25. 병원에서 치료서비스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7
Q26.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Q27. 지자체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Q28.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발급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8
Q29. 폐지된 자격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8
Q30. 미인정 사유는 어디서 확인 하나요?	8

목 차

Ⅲ. 신청방법	9
Q31. 핸드폰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9
Q32. 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인정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라고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Q33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9
Q34. 민간 아이핀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9
Q35. 민간 아이핀 로그인이 안 됩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10
Q36. 작년에 민간 아이핀을 발급받았는데, 아이디가 없다고 합니다.	10
Q37. 자격인정 신청란의 최종학력과 신청학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10
Q38. 신청서에 민간자격증명과 발급기관명에 무엇을 기입해야 하나요?	10
Q39. 파일 업로드가 안 됩니다.	10
Q40.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제출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1
Q41. 자격신청 결과조회에서 상태가 '대기'로 되어 있어요. 신청이 된 게 맞나요?	11
Q42. 온라인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11
Q43. 최종 제출한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할 수 없다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11
Q44. 자격인정 신청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1
Q45. 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후 심의 진행 중인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2
Q46. 자격인정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12
Q47. 자격인정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2
Q48. 심의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
Q49. 기타영역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13

I. 공통사항

Q1 (인정방법) 제공인력으로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정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환교육 수료 후 자격인정
2. 교과목 이수 후 자격인정

위 2가지 인정방법 중 해당하는 인정방법의 안내서를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인정방법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신청회기 인정방법 게시물에서 확인 바랍니다.

Q2 저는 고시 이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증도, 발달재활서비스 경력도 없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나요?

☞ 교과목이수 자격인정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회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Q3 (신청방법) 자격인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자격인정 신청은 인정방법(전환교육 수료 또는 교과목 이수)별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회 전환교육 자격인정 안내서」의 ‘교과목 이수 자격인정 절차’ 및 ‘온라인 자격인정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우편, 방문 및 이메일 등으로 제출한 서류는 심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온라인으로 자격인정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4 자격인정 신청에서 최종 인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전환교육 수료자 자격인정 접수 마감일 이후 공지 예정입니다.

이전회기에는 3~4개월 소요되었으나 절차개선을 통해 기간이 단축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원본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 아니오. 원본서류는 최종자격인정 결과발표 후 개별로 안내를 드린 인정자에 한하여 받고 있습니다. 개별로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최종자격인정 되셨습니다. 개인 아이핀 로그인 후 직접 자격인정확인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자격인정서 출력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필독] 제7회 전환교육이수 최종심의결과 통보 및 자격인정확인서 발급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신청서 1개로 여러 제공영역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신청서는 제공 영역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영역으로 자격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정받고자 하는 제공 영역별로 신청서 기입 및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하여 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Q7 제공영역별로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 네. 자격인정은 9개 제공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 영역별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8 민간자격증소지자로 여러 제공영역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전환교육 후 고시이전 민간자격증 소지자 조건으로 한 개의 영역 자격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영역 민간자격증으로 자격인정 불가하나 「교과목 이수」 혹은 「관련학과+관련경력 1,200시간」을 통해 자격 확인 가능합니다.

Q9 고시 제 2018-167호 시행(2018.9.12.)이후에 민간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과목이수를 통해 자격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Q10 전화상담은 자격인정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나요?

☞ 네. 전화상담은 자격인정 신청기간 동안 진행되며, 16시-18시에 대표번호 “1544-6065” 로 전화연결 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상담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인정업무 담당자가 상담을 진행하므로 자격인정 기간에는 상담전화로 인해 인정업무가 어려워 자격인정 신청기간 동안에만 전화 상담을 진행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격인정 신청 기간 동안은 해당 자격인정 신청에 관한 상담만 진행되오니 해당하지 않는 상담 내용은 1:1문의를 이용하십시오(교과목이수 신청기간에 전환교육 전화 문의 불가).

신청기간에는 전화 상담이 폭증하오니, 상담 전 자격인정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개별적 상황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를 중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부서로 연락 시 상담이 불가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 열린광장 > 1:1문의를 이용하십시오.

Q11 홈페이지 1:1문의에 남긴 제 문의가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안보여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 진행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었다면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셨던 질문의 ‘제목’으로 검색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12 전환교육 대상자가 자격인정자인가요?

☞ 아니요. 자격인정에 대한 심의 권한은 자격관리위원회 권한입니다.

전환교육 대상자가 자격인정 자를 의미하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미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Q13 전환교육을 21년 3월 31일 이전에 이수 했습니다. 제공인력 ID를 입력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경력증명서에 제공인력아이디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내서 p12, p16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ID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근무하셨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Q15 자격인정 못 받은 사람은 2021년 9월 12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가요?

☞ 아니요. 고시이전(18.9.1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관련학과+ 경력 1,200시간(발달재활서비스)이 있는 경우에는 21년 9월 12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환교육 30시간 수료한 후 23년 9월 12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전환교육수료자) 자격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전환교육 이수 후(21년 9월 12일까지), 23년 9월 12일까지 자격인정 유예기간 이므로 전환교육 이수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이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관과 꼭 논의 하셔야 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환교육 이수 후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인정 절차를 걸쳐 최종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자격인정에 대한 심의 권한은 자격관리위원회 권한입니다. 전환교육 대상자가 자격인정자를 의미하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미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Q16 기타영역은 교과목 이수 자격인정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기타영역은 기존 제공영역 9개영역에 속하지 못한 고시이전(180912) 기존제공인력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현재는 경과조치 기간입니다. 따라서 전환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인정 방안만 있습니다.

II. 제출서류

Q17 전환교육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로 어떤 것이 있나요?

- ☞ 신청방법 별로 다르기 때문에 안내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내 열린광장 > 공지사항 > 8회 자격인정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8 고시 제 2018-167호 시행(2018.9.12.)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안내서 p8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내 열린광장 > 공지사항 > 8회 자격인정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9 고시 제 2018-167호 시행(2018.9.12.)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안내서 p9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내 열린광장 > 공지사항 > 8회 자격인정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0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한 원본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최종 자격인정 후 사본을 제출하면 안 되나요?

- ☞ 네. 원본서류를 꼭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최종 자격인정 후 진위여부가 필요한 ‘인정자’에 한하여 원본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진행한 서류와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1 전환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전환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전환교육 신청 및 일정,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bdedu.hunet.co.kr) ☎1833-3460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전환교육 신청 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cert>)에서 전환교육 대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하셔야합니다.

※ 전환교육 신청 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인정여부는 사전 확인 불가, 전환교육 대상자 요건 확인만 가능합니다.

※ 9개 영역 점검표 경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환교육(하늘색 상자)> 전환교육대상 점검표

※ 기타영역 점검표 경로: 홈페이지> 열린광장> 자료실> [전환교육점검표] 기타 영역(10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제공영역)

Q22 전환교육은 무엇인가요? 일부 과목만 수강 가능한가요?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 전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3년의 유예기간동안 들어야하는 교육입니다. 총 10과목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과목 다 이수해야 하며, 일부 과목만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아동의 이해 3시간, 아동발달 3시간,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3시간, 상담 심리학 3시간, 심리학개론 3시간,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3시간, 재활행정과 정책 3시간,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3시간,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3시간, 장애인복지론 3시간)

Q23 민간자격증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민간자격 취득 자격증명증에 명시된 명칭과 현재 사용되는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사용 명칭 확인, 자격인정 서류 제출 시 취득 시 자격증 사본과 변경 자격증 사본, 명칭 변경 확인서(발급기관 직인 포함) 제출해야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심의에서 해당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4 관련학과 전환교육 경력 산정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 관련학과 기준으로 경력 산정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시 이전 경력만 해당).
1. 관련학과 전문학사(2, 3년제) = 발달재활서비스 근무경력 1,200시간 증빙 필요
 2. 관련학과 4년제 학사 또는 석사 (600시간 경력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근무경력 600시간 증빙 필요
 3. 관련학과(전공) 4년제 학사 (600시간 경력인정) + 관련학과(전공) 석사(600시간 경력인정) = 경력증빙 필요없음
- 하지만, 동일전공확인여부는 자격인정 신청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후에 알 수 있습니다.

Q25 병원에서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 아니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 등록된 고시이전(18091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Q26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자격인정 경력증명 대체서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경로에서 해당서류를 작성 후 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경로 : 홈페이지(www.broso.or.kr/cert) → 열린광장 → 자료실 →[경력증명] 전환교육 수료자 경력증명 서류 제출 안내 (서식2)
- ※ 5년 이상 제공인력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서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에 시·군·구 공무원에게서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로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Q27 지자체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내의 결제내역, 건강보험득실확인서, 4대보험 증빙서류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경력을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도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서류를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해야 자격인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Q28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발급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9

폐지된 자격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고시이전 취득 자격증으로 현재 폐지된 자격증의 경우는 폐지된 자격증의 경우에도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폐지자격검색>에서 검색되어야 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검색이 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인정 될 수 있습니다.

Q30

미인정 사유는 어디서 확인 하나요?

☞ 8회 안내서 p31 ~ 34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방법

Q31 핸드폰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반드시 PC 컴퓨터를 사용하여 신청하십시오. 익스플로러보다 ‘크롬’에 적합하오니, 되도록 ‘크롬’을 사용하여 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신청 진행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Q32 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인정 신청기간이 아닙니다.’라고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은, 인정 방법별로 정해진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33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 홈페이지> 열린광장> 자료실> 자격인정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하여 민간아이핀 인정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Q34 민간 아이핀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8회 전환교육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p41을 참고하십시오.

Q35 민간 아이핀 로그인 안 됩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8회 전환교육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p41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의는 민간 아이핀 관리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민간 아이핀 문의

- 홈페이지 문의 : 민간 아이핀(<http://www.ok-name.co.kr>) > 고객센터

Q36 작년엔 민간 아이핀을 발급받았는데, 아이디가 없다고 합니다.

☞ “기존 발급 아이디”로 아이핀을 재발급해주십시오. 민간 아이핀 로그인 > 신규발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37 자격인정 신청란의 최종학력과 신청학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 관련학과+경력으로 인정받으시려는 경우 관련학과의 학력을 신청학력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은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력입니다. 학사, 석사 모두 관련 학과인 경우는 신청학력으로 학사를 기입하시고 학사, 석사 학력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민간자격증으로 인정받으시려는 경우는 관련학과와 관련없이 최종학력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Q38 신청서에 민간자격증명과 발급기관명에 무엇을 기입해야 하나요?

☞ 민간자격증과 동일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신청 영역과 관련 없는 자격증을 기입하거나 오기입은 주요 미인정 사유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민간자격증명: 미술심리상담사, 발급기관명: 한국미술심리치료학회)

Q39 파일 업로드가 안 됩니다.

☞ 구비서류는 지정된 확장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확장자로 제출서류를 등록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확장자 확인 방법 : 제출서류 문서명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뒤 마우스 우클릭 > 속성 > 새 창의 “파일형식” 확인

Q40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제출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 > 자격신청 결과조회(주황색 네모박스) > 신청회기 ‘일정명’ 클릭

Q41

자격신청 결과조회에서 상태가 ‘대기’ 로 되어 있어요. 신청이 된 게 맞나요?

☞ 아니요. 최종 신청 시 상태가 ‘신청완료’ 로 됩니다. 대기로 표시된다면, “홈페이지 메인 > 자격신청 결과조회(주황색 네모박스)” 에서 ‘신청회기’ 의 ‘일정명’ 을 클릭하여 ‘신청’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Q42

온라인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최종 서류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수정 및 동일 영역 신청서 재제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관리자가 인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임의 수정 할 수 없으며, 임의 조작·변경을 통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조치입니다. 따라서 최종 신청 진행 전 반드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안내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Q43

최종 제출한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할 수 없다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신청서는 제공영역별로 한 번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회기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신청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신청을 진행한 경우,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Q44

자격인정 신청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 > 자격신청 결과조회(주황색 네모박스) > 신청회기 ‘일정명’ 클릭

Q45 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후 심의 진행 중인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자격인정 심의 과정은 신청서 제출 후 신청완료 > 접수 > 1차 심의완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상태는 홈페이지 메인 > 자격신청 결과조회(주황색 네모박스) > 신청회기 ‘상태’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심의 완료 시 문자발송이 진행됩니다.

Q46 자격인정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개인 아이핀 로그인 후 직접 자격인정확인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용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자격인정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만 가능합니다.
※ 자격인정서 출력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필독] 제7회 전환교육이수 최종심의결과 통보 및 자격인정확인서 발급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7 자격인정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본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http://broso.or.kr/cert>) 우측 빠른 서비스 > 자격인정 진위확인” 에서 해당 정보를 기입하실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Q48 심의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오류로 인해 “자격인정 결과 미인정” 되어, 해당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거서류 제출과 함께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회 자격인정 최종결과 통보 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9 기타영역으로 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기타영역의 경우 교과목 이수로는 신청할 수 없고, 고시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있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혹은 고시이전 관련 학과+관련경력 1,200 시간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 내용은 p12~15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